

Ⅱ. 변경 인정 신청(전력기술인·감리원) 안내

◆ 변경 인정 신청서류

1. 전력기술인·감리원 변경 인정 신청서 (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)

☞ 반드시 제출할 것

2. 경력확인서 (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) 또는 경력(재직)증명서 원본

- 근무처 경력을 신고하는 경우에 한함
- 경력확인서[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포함]는 근무부서 및 주(담당)업무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며, 총무·인사담당자가 확인하고 대표자 날인함
- 경력확인서가 2장 이상일 경우에는 간인 필요

※ 근무회사의 부도, 폐업, 양도·양수 등의 사유로 경력확인서(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포함)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다음의 서류제출

- 고시 별지 제3호서식의 경력보증서(단, 참여사업은 인정불가)
- 재직사실을 증명하는 서류(본인 및 보증인)
- 부도, 폐업, 양도·양수 등 증명서류
 - 근로자 : 사실증명 또는 법인등기부등본(인터넷 등기소 등)
 - 대표자 : 폐업사실증명원 또는 법인등기부등본(인터넷 등기소 등)
- * 사실증명 및 폐업사실증명원 발급처 : 관할 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텍스(민원증명 이용)

3. 재직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중 택 1 (경력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 한함)

- 근로자
 -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(국민건강보험공단 발행)
 -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(국민연금공단 발행)
 - 고용·산재보험 자격이력내역서 (근로복지공단 발행)
- 대표자·상근등기임원 :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
- 공무원·공공기관 소속직원 : 해당서류 면제
- ※ 상기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: 인사기록부, 급여이체내역, 소득세 납부내역 등
- ※ 해외 근무경력의 경우 : 출입국증명서 추가제출

4. 참여사업을 증명하는 서류 (참여사업을 신고하는 경우에 한함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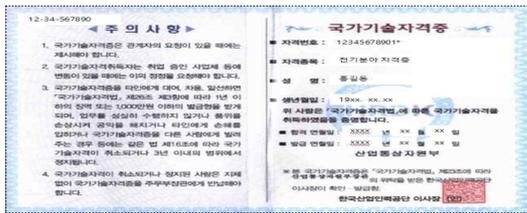
- 공사계약서, 용역계약서, 용역수행현황확인서, 실적증명서, 자체사업계획서 등

5. 그 밖에 자격사항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

- 학력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(학력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 한함)
 - 모교에서 직접 발급, 온라인 발급 또는 팩스 [주민자치센터(구 동사무소)] 발급

○ 자격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(자격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 한함)

- 자격증 사본 제출



▶ 자격증 제출 시 좌측 그림의 면을 반드시 포함하여 주십시오.(자격증 진위 여부 관련)

- 상장형 자격증 또는 국가기술 자격 취득사항 확인서 [발급일로부터 90일 이내]

○ 상훈 및 교육사항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(해당자에 한함)

- 상훈을 증명하는 서류 : 표창장 사본 등
- 교육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: 교육이수확인서 사본(단, 협회교육을 이수한 경우 불필요)

6. 전기사업법 또는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라 우리 협회에 신고된 내용은 제출 서류 일부 또는 전부면제

-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근무기간 경력은 경력확인서 또는 4대보험 서류 중 하나를 제출하면 선임기간과 제출 자료의 근무기간이 일치하는 기간을 경력으로 인정
- 감리원으로 배치되어 감리배치가 종료되었거나, 완료보고가 된 감리경력은 경력확인서 및 참여사업 증빙서류 제출 면제
- 온라인
 - 신고방법 : 협회 홈페이지/ 온라인신고 및 증명서발급/ 경력신청/ 변경인정신청
 - 신고대상 : 기존에 신고된 경력에 대하여 아래 사항을 추가하는 경우
 - * 학력(온라인으로 발급되고, 발급번호 조회를 통해 진위여부 확인 가능한 것에 한함)
 - * 자격, 상훈, 교육사항
 - : 자격, 상훈, 교육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참고
 - * 근무처 경력사항
 - : 협회에 선·해임신고, 감리배치신고(4대보험 중 택 1 첨부), 감리완료보고, 설계·감리 실적신고가 된 건에 한함

◆ 접수방법

1. 접수방법 : 방문 및 우편접수, 온라인 (온라인 신고방법 및 신고대상 참고)
2. 접수장소 : 중앙회 및 전국 21개 시·도회